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 반영예정 안내

1.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대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을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을 추진하시도록 각 대학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교육국제화담당관-5741, '21.12.9.)
3. 이와 관련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해당 사항을 **향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상 : 학위과정 -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 및 편입생은 포함하며, 교육과정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은 제외)
 어학연수과정 - 대학 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인 어학연수과정에 수학중인 유학생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반영(안) >

구분	지표	내용	통과기준
교육 국제화역 량 인증제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공 통)	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 단, '22년 평가의 경우 '22.1.1~8.31 기간 만 평가함에 따라 60% 기준 적용(대상 : 4.1 기준 재학생) ※ '23년부터는 전년도 실적(1.1~12.31) 활용 (대상 : 전년도 4.1 기준 재학생) ※ 추후 통과 기준 연차적으로 확대
	한국 법령 이 해 교육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폭 력 예방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 련 제도, 형법 등 기초법·질서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 등 이해 교육 실시 여 부 및 이수율	(실시여부) 매학기 1회 이상 (참여율) 학기별 참여율 60% 이상 ※ '22년 평가는 '22년 1학기에 한해 평가 (대상 : 해당년도 4.1. 기준 재학생)
실태 조사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공	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율	40% 이상 ※ 단, '22년 평가의 경우 '22.1.1~8.31 기간 만 평가 (대상 : 4.1 기준 재학생) ※ '23년부터는 전년도 실적(1.1~12.31) 활용 (대상 : 전년도 4.1 기준 재학생) ※ 추후 통과 기준 연차적으로 확대

통)			
----	--	--	--

4. 이에, 각 대학에서는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소속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등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무관 이정호 행정사무관 전보애 교육국제화담당관 전결 12/30 김진형

협조자

시행 교육국제화담당관-6106 (2021.12.30.) 접수 국제협력과-8868 (2021.12.31.)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797 /전송 044-203-6788 / wglee84@korea.kr / 비공개